

교수일반분과/동성애/03/

성평등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폐해

길원평(부산대학교 자연대학)¹⁾

요약

성평등 정책이 미치는 폐해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성평등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양성평등은 남녀평등을 의미하는 반면에, 성평등, 즉 젠더평등은 다양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한다. 성평등이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한 평등임을 나타내는 다양한 근거 자료를 기술하였다.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는 서구 사회에 나타나는 폐해를 소개하였다. 성평등이 이루어지면 남녀 성별 구분이 사라지고, 남성이었던 트랜스젠더가 여성 화장실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기에,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최근에 한국 국민들이 보여 주었던 성평등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 운동들을 소개하였다. 2017년에 헌법의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하여 동성결혼을 인정하려고 할 때에 많은 국민들이 반대해서 막았다. 성평등을 옹호하는 주장들과 그에 대한 반론도 기술하였다. 특히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같다는 주장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로 반박하였다. 성평등 정책을 명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그것을 시행하는 여성가족부가 최근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성평등 조례를 만드는 근원이기에, 지속적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여성가족부의 정책을 수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성평등이란 용어에 미혹되지 말고 윤리도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헌신해야 한다.

I. 서론

최근에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젠더의 의미도 모르면서, 젠더 자문관, 젠더 마을 등을 만들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2018년에 성평등 정책을 포함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노골적으로 여성가족부 등의 정부 기관에 의해서 성평등, 즉 젠더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성평등 의미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받아드릴 수 없는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의 개념이 들어 있다. 이 글은 먼저 성평등의 의미를 고찰한 후에, 성평등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서구 사회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소개하였다. 최근에 한국 국민들이 보여 주었던 성평등 정책에 대한 반대 운동들을 소개한 후에, 성평등을 옹호하는 주장들과 그에 대한 반론도 기술하였다.

II. 성평등(gender equality)의 의미

생물학적 성(sex)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신체에 나타나지만, 젠더(gender)는 생물학적인 성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을 의미한다. 생물학적 성은 남성과 여성의 두 종류의 성만 존재하지만 젠더는 수십 가지의 성 정체성을 포함한다. 젠더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을 의미하기에, 성평등, 즉 젠더평등(gender equality)은 다양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한다.

1) 부산대학교 자연대학 물리학과 교수(Pusan National University),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wpgill@pusan.ac.kr

미한다. 이제부터 성평등이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하는 평등임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자료를 소개하겠다.

1. 위키백과에 있는 성평등에 대한 설명²⁾

아래 설명에서 양성평등은 남녀 두 성별을 고려하고, 성평등은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개념임을 나타낸다.

“성 평등(한국 한자: 性平等)은 모든 사람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성별에 근거하여 차별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관점이다. 이는 민주적인 활동과 같은 노동에 같은 급여를 보장하는 것과 함께, 법과 사회적 상황에서 평등을 창조하고자 하는 UN 세계 인권 선언의 목표 중 하나이다. 두 성별(남성과 여성)에만 국한되지 않고, 성소수자들에게도 뜻이 통한다는 점에서 '양성평등'의 개념과 구별되며, 동시에 성 평등이라는 개념은 양성평등의 상위에 위치한다.”

2. 나무위키 미러에 있는 성평등에 대한 설명³⁾

아래 설명에서 양성평등은 남녀 두 종류의 젠더만을 고려하는 ‘젠더 이분법’을 채택하고, 성평등은 남녀 이외의 다양한 성 정체성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

“성평등(gender equality, sex equality)이란, 모든 성별은 공평한 권리(rights), 책임(responsibilities), 기회(opportunities)가 있다는 개념을 말한다. 즉, 성평등은 각 성별의 이익(interests), 필요사항(needs), 우선사항(priorities)을 모두 고려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성별을 규정하는 관점에 차이가 있는데, 양성평등은 젠더 이분법을 채택하는 반면 성평등은 젠더 이분법을 거부한다. 모든 성별이란 남성과 여성뿐만이 아닌 제3의 성들, 즉 젠더퀴어까지 모두 아우르는 말이며, 공평한 대우란 차이를 인정하되 불합리한 차별은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 세상에는 여성과 남성 두 가지 성별만 있는 것이 아닌, 안드로진이나 바이젠더, 에이젠파(무성), 뉴트로이스 등의 다양한 성별들이 있다. 또한 성 지향성에도 이성애 하나 뿐만이 아닌 양성애, 범성애, 동성애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성 평등'이란,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 말고도 저러한 제3의 성별에 대한 평등, 그리고 다양한 성 지향성들에 대한 평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3.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⁴⁾

아래 홈페이지 내용은 양성평등은 남녀 두 종류의 젠더만을 고려하는 ‘젠더 이분법’을 채택하고, 성평등은 다양한 성 정체성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나타내고 있다.

“01. 성차별을 조장하는 ‘양성평등’

-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1) 정책 원칙 및 방향

2) <https://ko.wikipedia.org/wiki/%EC%84%B1%ED%8F%89%EB%93%B1>

3) <https://namu.mirror.wiki/w/%EC%84%B1%20%ED%8F%89%EB%93%B1>

4) http://hotline.or.kr/policy_proposals/25144

○ ‘성별’은 사회적 성(gender)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양성평등’은 성을 두 개로 구분함으로써 젠더 이분법을 강화하고 성적 다양성을 배제하는 문제적 명명임.

○ 성별에 따른 차별 및 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은 젠더관점에 입각해 성별권력관계에 따른 구조화된 불평등 문제를 다루어야 함. 정책의 목적과 내용에 있어 ‘성평등’, ‘성차별’ 용어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함

2) 현황 및 필요성

○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필두로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표방하며, ‘양성평등’은 남녀가 같아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 고정관념, 성차별적 제도·관행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양성평등’ 정책 내용 및 집행에 있어서는 ‘생물학적 성별(sex)’에 따른 남녀이분법에 기초해 기계적이고 양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집중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성소수자 인권보호 배제를 표명하는 등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성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 이러한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 운용은 남성 역차별 주장 및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맞물려 오히려 성별고정관념과 여성과 남성 간의 대결/대칭구도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여성 및 성평등 정책 전반을 후퇴시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평등 및 성주류화의 의미를 왜곡·축소시키는 양성평등 기본조례로의 제·개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4.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⁵⁾

2014년 2월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꿀 것인지, 혹은 ‘성평등기본법’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때에 진술인으로 숙명여대 법대 김용화 교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정숙 회장, 인천대 기초교육원 박진경 교수,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장명선 연구원 4명이 참석하였다. 진술인들의 발언을 발췌하면, 김용화 교수는 “현재 헌법을 위시한 하위법에서 제3의 성은 법적인 보호에서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다른 성불평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어떤 정책적 혼란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략) 법리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최고규범인 헌법 제11조 및 제36조에 따른 양성이라는 용어가 좀 더 부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라고 했다.

김정숙 회장은 “우리 헌법 36조1항에도 있듯이 가족의 중요성 또 혼인 이런 것들이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이 되어 있고 (중략) 현재는 법제명으로 양성평등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우리가 제3의 성이다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라고 했고, 장명선 연구원도 “헌법상의 11조하고 36조를 보면 성평등보다는 양성평등이 훨씬 더 나았다라는 부분이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 성적 지향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적 지향에 대한 부분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을 논의하기에는 약간 무르익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평등으로 했을 때 약간의 혼란이 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라고 했다. 이처럼 진술인 4명 중 3명(김용화 교수, 김정숙 회장, 장명선 연구원)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내었고, 그 이유로는 ‘성평

5) 제322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록 제2호, 29~39쪽

등'에는 '제3의 성', '동성애', '성적지향'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의 '성평등' 사용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을 때에 헌법 제36조 및 제11조에 의해서 양성평등이 더 부합하다고 진술하였다.

5.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만든 성평등 관련 해외입법동향 분석 자료

여성가족부 요청에 의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2016년에 만든 "성평등 관련 해외입법동향 및 지원체계에 관한 법제분석"이 있다. 이 자료의 10페이지에 "성평등권을 보호하는 국제규범이 해석론으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사안에도 적용이 가능한 현 시점"과 "성평등권의 보호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가 포함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 시점"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 이러한 문구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성평등'이란 의미 안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가 포함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법제연구원 자료의 11페이지를 보면, 영국의 경우에 2000년대 이후부터 성평등에 관한 인식 변화가 시작되어 남녀평등의 문제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 및 평등' 문제로 변화되었다고 되어 있다. 즉, 영국에서 2000년 이후에 '성평등'이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평등이란 개념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국법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유엔과 서구 일부 국가에서 성평등을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평등' 또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2018년 1월에 발표한 보고서 62페이지에 있는 '개념 정의'에 양성평등(sex)은 남과 여라는 생물학적 차이(선천적)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와 연결을 짓고, 성평등(gender)은 사회역사적(구조, 환경, 문화)으로 형성된 차이(후천적)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와 연결을 짓고 있다. 또한 보고서 64페이지에 '혼인 및 가족생활의 주체를 남녀(양성)에서 '개인'으로 전환', '가족의 성립에 있어서도 결혼 이외의 다양한 가족 인정'이란 문구가 있어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다.

III.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는 서구 사회에 나타나는 폐해

성평등이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기에, 성평등은 동성애, 동성결혼 등을 이성애, 이성결혼과 동등하게 인정하게 된다.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사람이 여성이라고 느끼면 결국 남성을 사랑하게 되기에, 성평등을 법적으로 인정하면 결국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대체되면, 연관된 성별, 혼인, 가족, 가정 등의 의미가 통째로 바뀌게 되어 매우 큰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서구에서 나타나는 폐해들을 살펴보면, 2016년 6월 미국 뉴욕시는 공식적으로 31개의 성을 공포하였고, 상대방이 원하는 성호칭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였다.⁶⁾ 캐나다 온타리오에서는 공립학교 3학년(8세)때 자신의 성별은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동성결혼은 정상인 것으로 배운다.⁷⁾ 영국,

6) Lifesite News, 2016년 5월 27일

<https://www.lifesitenews.com/news/29-new-words-for-deviance-you-can-be-fined-250000-if-or-not-using-in-nyc>; Gothamist, 2016년 5월 19일

http://gothamist.com/2016/05/19/gender_pronouns_false_fine.php

미국 등에서는 여권 신청서와 공식문서에 엄마, 아빠 용어 대신에 Parent 1, Parent 2를 사용할 수 있다.⁸⁾ 미국 뉴욕시와 워싱턴 주는 생물학적 성이 아닌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⁹⁾ 오바마 정부는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의 화장실, 락커, 샤워실을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¹⁰⁾ 미국 워싱턴 DC는 미국 내에서 최초로 성별 구분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다인용 화장실을 설치하였고,¹¹⁾ 캘리포니아주, 뉴욕시, 시애틀시는 모든 1인용 화장실을 성중립 화장실로 변경하도록 하는 법령이 제정 되었다.¹²⁾

성평등이 이루어지면 남녀 성별 구분이 사라지고, 남성이었던 트랜스젠더가 여성 화장실, 샤워장, 목욕탕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면, 여성들에게 얼마나 불편하고 위험하겠는가? 화장실 등의 여성전용공간에서 성폭력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또한 트랜스젠더는 반대의 성으로 이루어진 스포츠팀이나 스포츠 경기에 참전할 수 있게 된다. 예로서, 가브리엘 루드윅은 생물학적으로는 남자로서 이라크 참전 용사였지만, 여자 농구선수로 출전하였고 여학생들의 학부모들은 강력히 항의하였지만 무시되었다. 해군 출신의 남성이었던 트랜스젠더가 여성 격투기 경기에 출전해서 상대방 여성의 두개골이 파손되는 결과를 낳았다. 최근에는 남성이었던 트랜스젠더가 육상 경기에 출전하여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처럼 남성이었던 트랜스젠더에 의해서 여성 스포츠 경기를 석권하게 되더라도, 성평등을 그 사회가 받아들인 후에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다.

-
- 7) Ontario's Radical Sex Ed Curriculum, Campaign Life Coalition
http://www.campaignlifecoalition.com/index.php?p=Sex_Ed_Curriculum: 2015 The Ontario Curriculum Grades 1-8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124 페이지, 231페이지
<http://www.edu.gov.on.ca/eng/curriculum/elementary/health1to8.pdf>
- 8) Goodbye, mother and father! Now Parent 1 and Parent 2 appear on PC passport form, MailOnline, 2011년 10월 3일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2044491/PC-passport-Goodbye-mother-father-Now-Parent-1-2-appear-form.html>: Gay union offshoot: In Tennessee, mother and father now called 'Parent 1,' 'Parent 2', Christiantoday, 2015년 8월 20일
<https://www.christiantoday.com/article/gay.union.offshoot.in.tennessee.mother.and.father.now.called.parent.1.parent.2/62390.htm>
- 9) 뉴욕시 '성소수자 화장실 권리장전' 한국어 흥보, 중앙일보 New York, 2016년 6월 7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330662; Washington Quietly Adopts New Transgender Bathroom, Locker Room Policies, The Daily Signal, 2016년 1월 4일
<http://dailysignal.com/2016/01/04/washington-quietly-adopts-new-transgender-bathroom-locker-room-policies/>
- 10) Obama directs public schools to accommodate transgender students, PBS NewsHour, 2016년 5월 13일
<http://www.pbs.org/newshour/rundown/obama-administration-to-decree-transgender-access-for-public-school-bathrooms/>; [카드뉴스]'성 중립 화장실'이 뭐지? 남녀공용화장실이랑 달라?, News 1 뉴스, 2015년 7월 31일, <http://news1.kr/articles/?2355511>
- 11) D.C. installs first multi-user "all gender" bathrooms in Reeves Center, Metro Weekly, 2017년 3월 16일
<http://www.metroweekly.com/2017/03/dc-installs-all-gender-bathrooms-reeves-center/>
- 12) New York City adopts gener-neutral bathrooms, CBS News, 2016년 6월 28일
<http://www.cbsnews.com/news/new-york-city-adopts-gender-neutral-bathrooms/>; California approves gender-neutral bathrooms, CBS News, 2016년 9월 30일
<http://www.cbsnews.com/news/california-approves-gender-neutral-bathrooms/>; Seattle passes all-gender bathroom law, Fortune, 2015년 8월 13일
<http://fortune.com/2015/08/13/seattle-gender-neutral-restrooms/>

IV. 성평등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 움직임

2017년 1월에 발족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헌법에 있는 양성평등을 성평등 또는 평등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2017년 2월 7일의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현행 규정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평등원칙 규정과 그다음에 별도로, 앞에서 말한 일반적인 평등규정과 별도로 성평등 조항을 신설할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심사 결과에 이견 없는 것으로 되었음”이라고 되어 있고, 2017년 3월 14일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혼인 및 가족생활의 주체를 ‘남녀’에서 ‘개인’으로 전환하여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결합을 인정하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2017년 6월 19일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록에 따르면, “평등원칙 중 차별금지 사유를 현행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외에 ‘인종, 언어’ 등을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성 평등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에도 대체로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규정은 추후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이 회의록에 따르면, 30여명의 국회의원과 50여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헌법에 있는 ‘양성의 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고, 동성결혼을 포함한 다양한 결혼을 인정하자는 것으로 합의를 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2017년 8월~9월에 영남, 호남, 충청, 수도, 강원 등 11개 권역별로 열린 헌법에 대한 국민대토론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헌법에 있는 양성평등을 성평등 또는 평등으로 바꾸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개헌을 반대하였다. 예로서, 2017년 9월 3일 오후 4시에 광주 금남로 518민주광장 앞에 경찰 추산 약 2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성평등을 통한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 반대”의 구호를 외쳤고, 대전 중심지에 경찰 추산 약 3만 명의 시민이 모여 “성평등을 통한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 반대”를 외쳤다. 이러한 외침으로부터 국민들이 얼마나 성평등을 통한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2017년 11월 21일에 국회 정문 앞에서 711,922명의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 반대” 서명지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특히, 300여개 대학의 약 3천명 교수들이 동참하였다. 국민대토론회가 끝난 후에 2017년 11월 23일에 있었던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집중토론 시간에 김성태 국회의원이 “자유발언대, 국민대토론회, 개헌 홈페이지에도 성평등 항목에 대하여 상당한 국민들의 여론이 대다수이다.”라고 발언을 하였다. 이 발언은 전국 11개 권역별 헌법 국민대토론회 등에서 성평등에 대해 반대하였던 국민들의 의견을 잘 요약하였다고 본다. 결국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개헌을 중단하였다.

여성가족부가 2017년 11월 16일에 발표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은 당연히 양성평등기본법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1차(2015-2017)와는 달리 양성평등 기반에서 성평등 기반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 작성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은 이 법의 제1조(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수립하려는 성평등 기반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을 정면 위반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했다. 대다수 국민들이 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을 반대함으로써, 결국 여성가족부는 2017년 12월 20일에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공청회에서 발표된 안에 비하여 비전과 목표, 추진체계 등이 성

평등에서 양성평등으로 수정되었고, 특히 정부의 여러 부처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들과 학교 교육과 시민 교육이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수정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한다는 발표가 있을 때,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회원들이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소수자까지 포함하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¹³⁾

V. 성평등을 옹호하는 주장들과 그에 대한 반론

이제부터는 성평등을 옹호하는 주장들과 그에 대한 반론을 적고자 한다.

1.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같다는 주장

법무부는 2018년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통과시킬 때에 성평등에 대한 항의에 대해서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용어는 모두 영어 ‘gender equality’의 번역으로 혼용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 답변에 대한 반박을 하면, 첫째로 2018년 1월에 발간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62페이지에 “양성평등(sex)= 남과 여라는 생물학적 차이(선천적)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 성평등(gender)= 사회역사적(구조, 환경, 문화)으로 형성된 차이(후천적)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라고 기술함으로써,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같지 않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만약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2018년에 헌법에서 ‘양성평등’ 삭제하고 ‘성평등’ 조항을 신설하려고 노력했을 이유가 없다.

둘째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의 평등 대우를 명하고 있으므로 남녀의 성을 근거로 하여 차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현재 2001헌가9 판례), “헌법 제11조 제1항은…‘성별’의 경우를 살펴보면,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理性인 특징으로서”(현재 2006헌마328 판례)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6조의 ‘양성’과 제11조의 ‘성별’을 남녀의 생물학적인 성(sex)으로 해석함을 분명히 한다.셋째로 2017년 12월에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본계획에 있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니까,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소수자까지 포함하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넷째로, 한국 헌법에 ‘양성’이란 용어가 사용된 것은 1980년부터이다. ‘gender equality’이라는 용어가 한국에 들어오기 훨씬 전이기에, 양성평등의 영어가 ‘gender equality’가 될 수 없다. 2000년 이후에 ‘gender equality’가 양성평등으로 번역이 되었다면, 그러한 번역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번역을 근거로 양성평등과 ‘gender equality’가 같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한 위키백과, 나무위키 등의 자료에서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여성단체, 여러 자료 등에서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다.

2. 한국의 법률 체계 내에서는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같다는 주장

성평등 옹호자들은 아래와 같은 주장으로 교묘하게 성평등을 사용해도 된다고 합리화한다. “한국의 헌법과 법률은 ‘양성평등’이란 체계 하에 있기에, 그러한 체계 하에서는 ‘제3의성’과

13) 경향신문. 2017년 12월 20일자. “'성평등'은 왜 '양성평등'이 됐을까... '이데올로기의 최전선' 된
젠더-성소수자 문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201710001&code=940100#
csidx8be10dfbb315b49b7f80e0cfec884d7](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201710001&code=940100#csidx8be10dfbb315b49b7f80e0cfec884d7)

같은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서구 사회에서 말하는 성평등의 개념은 한국의 법률 체계 하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한국의 법률 체계 내에서는 같다.” 양성평등기본법이 있으니까, 경기도성평등조례에서 성평등을 써도 문제가 없고, 제3의성이 포함되지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위 주장에 대한 반론을 말하면, 현행 경기도 성평등 조례 제1조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가 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는 인권위법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성평등 조례를 해석할 때 그렇게 된다고 기독일보에 보도도 되었습니다. 인권위는 성별을 젠더로 해석하고 있고, 제3의성이 포함된다고 하고 있으니, 위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다른 나라, 특히 서구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서구를 따라가는 수많은 법조인들과 학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한국만 동떨어져서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같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한국 내에도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다르다고 보면서 성평등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이란 강력한 여성단체가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여성 국회의원, 여성 도의원,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성평등을 주장하는 여성 정치인들도 대부분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출신이거나 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다르고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영향을 받는 여성 정치인들이,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같다고 주장한다면 그러한 주장은 성평등으로 바꾸기 위한 입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양성평등기본법과 여러 법률에 이미 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내의 몇 군데에 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몇 개의 법률에서 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근거로 성평등을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양성평등기본법에 성평등의 정의가 없기에, 성평등이 법률 용어라고 볼 수 없다. 마치 성평등은 양성평등의 줄임말인 것처럼 위장해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어 사용은 잘못된 것이기에, 하루속히 헌법과 부합되도록 모든 법률에서 성평등을 모두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한다. 법률에서의 잘못된 용어 사용을 근거로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같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

4. 성평등이란 용어를 예전부터 사용했는데, 왜 새삼스럽게 문제 제기를 하느냐는 주장

예전에 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할 때에 국민들에게 정확한 의미를 알리지 않고 사용하였다. 이제는 국민들이 정확한 의미를 깨닫고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것이다. 정확한 의미를 처음부터 알렸다면 반대하였을 것이다. 또한, 서구 사회에서도 성평등 의미가 바뀌는 중이다. 영국도 성평등이 원래는 남녀평등을 의미하였는데, 2000년대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다.¹⁴⁾ 전 세계적으로 성평등을 옹호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의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변화를 보면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성평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14) 한국법제연구원, (2016) ‘성평등 관련 해외입법동향 및 지원체계에 관한 법제분석’, 11페이지

□ 영국의 성평등 관련 인식 변화

○ 2000년대 이후부터 성평등에 관한 인식 변화 시작

- 남녀평등의 문제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 및 평등’ 문제로 변화

5. 양성평등 대신에 성평등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

성평등 옹호자들은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같기 때문에 사용한다고 하다가, 정말 같다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도록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라고 항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양성평등 대신에 성평등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성평등 정책 내용 및 집행에 있어서는 ‘생물학적 성별(sex)’에 따른 남녀이분법에 기초해 기계적이고 양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집중되어 있다. 즉, 양성평등은 성차를 본질화하고 성역 할고정관념을 재생산·강화한다. 젠더 또는 성불평등의 문제는 단순히 남녀 성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별화되어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구조에 의해 노동과 가치, 책임과 의무가 다르게 배분됨으로써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젠더불평등은 각 개인이 처한 다른 사회적·경제적 맥락에 따라 다른 모양새를 갖고 다른 사회적 범주들, 즉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인종, 언어, 연령, 결혼 여부, 자녀 유무, 장애 여부, 성 정체성 등과 맞물려서 중첩되는 교차적 속성을 지닌다. 양성평등은 젠더 불평등을 양산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분리되고, 여성들/남성들 안의 차이와 불평등의 문제 및 다른 사회적 범주들과 상호작용하는 젠더 불평등의 구조적 교차성의 문제가 간과되어 문제해결의 방법론이나 정책 도구가 될 수 없다.”

위 주장에 대한 반론을 말하면, 첫째로 양성평등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 양성평등도 생물학적 성 자체에 의한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남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을 없애는 것이다. 남녀 차별을 없애는 것이 진정한 목표라면, 양성평등이란 개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사실 이제까지 양성평등에 기초한 법률과 정책들이 실제로 그러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로, 양성평등은 기계적 평등을 만든다는 논리에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양성평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본다. 셋째로,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의 포함 여부이다. 여성차별, 기계적 평등 등은 일반 여성들을 끌어드릴 핑계이며, 성평등을 추진하는 핵심들은 성적지향 포함여부를 잘 알고 있다.

성평등 정책을 실제로 실현하면 남녀가 화장실 등을 공유함으로써 여성들의 성폭력 위험 증가,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예산 배정, 남성이었던 트랜스젠더들에 의한 여성 스포츠경기의 석권 등으로 여성에게 아주 불리한 결과를 낳는다. 성평등 논리의 미혹은 쥬디스 버틀러와 같은 여성 동성애자에 의해 개발되어 진보 여성단체로 확산되었다고 본다. 성평등 정책이 여성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도의원, 여성 국회의원, 여성가족부가 앞장서서 주장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여성단체 핵심은 성평등에 트랜스젠더 등이 포함됨을 알고 있으면서 앵무새처럼 위장된 논리를 말하고 있다.

VI. 결론

성평등 정책이 미치는 폐해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성평등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양성평등은 남녀평등을 의미하는 반면에, 성평등, 즉 젠더평등은 다양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한다. 성평등이 다양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한다는 나타낸다는 근거로 위키백과, 나무위키,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만든 성평등 관련 해외입법동향 분석 자료,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등을 기술하였다. 공신력이 있는 국내 자료들을 통하여 성평등이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하는 평등임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는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는 서구 사회에 나타나는 폐해를 소개하였다. 성평등이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기에, 성평등은 동성애, 동성결혼 등을 이성애, 이성결혼과 동등하게 인정하게 된다. 성평등이 이루어지면 남녀

성별 구분이 사라지고, 남성이었던 트랜스젠더가 여성 화장실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기에,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남성이었던 트랜스젠더에 의해서 여성 스포츠 경기를 석권하게 된다. 이렇게 성평등이 이루어지면, 진짜 여성들이 불이익과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최근에 한국 국민들이 보여 주었던 성평등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 운동들을 소개하였다. 2017년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의해서 헌법에 있는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하여 동성 결혼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수많은 국민들이 반대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성평등으로 바꾸려는 개헌을 막았다. 여성가족부가 2017년에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성평등을 삽입하려는 시도도 많은 국민들이 항의함으로써 막았다. 본 논문에서는 성평등을 옹호하는 주장들과 그에 대한 반론도 기술하였다.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같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으로 반박하였다. 그 외에도 다양한 성평등 옹호 논리들을 소개하고 반박하였다.

최근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성평등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근원이 성평등 정책을 명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그것을 시행하는 여성가족부이기에, 지속적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여성가족부의 정책을 수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성평등 정책을 명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만들어졌기에, 앞에서 기술하였던 성평등을 받아들인 서구에서 발생하였던 폐해와 문제점들이 우리나라에서 생기고, 동성애와 동성결혼도 자연스럽게 합법화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성평등 옹호하는 세력은 진보적인 여성 단체와 서구의 풍조를 옮기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전문가 집단이다. 이러한 집단의 의식은 바뀌지 않기에, 성평등을 반대하는 측에서도 하루 속히 전문가 집단을 양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지만, 이러한 수비적인 대응만으로는 장기전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성평등이란 용어에 미혹되지 말고 윤리도덕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헌신하기를 바란다.